■ (해양경찰청) 범죄수사규칙 [별지 제184호의4 서식]

긴급응급조치 변경 고지서

대상자	성 명	()	주 민 등 록 번 호	(세)
	주 소			

< 긴급응급조치 내용 >

· 변경된 긴급응급조치: [□]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
[□]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

· 긴급응급조치의 보호 대상: [] 상대방 [] 상대방의 동거인 [] 상대방의 가족

· 긴급응급조치의 기간:

· 변경의 내용: (□ 긴급응급조치의 종류 변경 / □ 접근금지 기준지의 변경)

< 불복방법 >

이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결정내용을 위반한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사법경찰관 (인)